

한국과 독일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rough Comparison of Calculation Methods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remium in Korea and Germany

김 상 호*
Sangho Kim

산재예방 활동을 적절히 평가하여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면 기여와 비용부담의 연결고리가 강화되어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인하고, 이는 산재 감소에 기여하면서 재원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주의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산재 감소에 기여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개별실적요율에서 한국의 경우 기준기간에 발생한 모든 보험급여 지출액을 사용하는 반면, 독일에서는 기준기간에 발생한 신규산재에 기초하여 산정하고 있다. 사업주의 예방활동 강화를 유인하기 위해 기준기간에 발생한 신규재해에 기인하는 보험급여에 기초하여 개별실적요율 수지율을 산정하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문 색인어: 보험료 산정, 산재보험, 산재예방
한국연구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B051606

I. 서론

1964년 도입된 산재보험제도의 주된 기능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법적 규제와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둘

* 관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shkim@kd.ac.kr)
논문 투고일: 2010. 08. 19, 논문 최종 수정일: 2010. 10. 20, 논문 게재 확정일: 2010. 11. 24

째, 산업재해나 직업병이 발생하면 적절한 수단을 동원하여 건강과 근로능력이 회복되도록 하며 재해 근로자나 유가족에게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보상한다. 셋째, 보험원칙을 적용하여 산재 발생 위험을 분산시켜 산재발생 사업장의 재정압박을 완화한다. 넷째,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해 재해근로자가 배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을 하여 산재발생 책임 소재를 규명하지 않아도 되어 사업장에서의 산업평화 증진에 기여한다.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규제로 일정 수준의 산업안전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규정이 준수되도록 감독하며, 이것이 준수되지 않을 때 제재를 한다. 법적 규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산재예방 방법은 산재발생 위험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차등화 함으로써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산재예방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방 투자가 산재 발생 후의 보상보다 비용 효과적이기 때문에 산재예방은 근로자 복지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도 효율적이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산재빈도와 산재강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연구자는 생각한다. 2000년-2008년에 재해자수 및 재해건수가 각각 38.9% 및 39.5% 증가하였고(〈부표 1〉 참조), 재해율, 도수율 및 강도율이 정체 상태이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사업주의 산재예방 활동을 적절히 평가하여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면 기여와 비용부담의 연결고리가 강화되어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인하고, 이는 다시 산재 감소에 기여하면서 재원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주의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산재 감소에 기여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방식의 전반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독일 산재보험 재정방식을 깊이 있게 다룬 논문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험료 산정 방법 및 주요 문제점을 고찰한 후 독일 제도의 중요 부분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이어서 한국과 독일 제도를 비교한 후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한국의 보험료 산정 방법 및 주요 문제점

1. 보험료 산정 방법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보험료는 현재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산정된다¹⁾.

- ① 징수목표액 설정
- ② 보험연도 임금총액 추정
- ③ 업종별 보험급여 지급률 산정
- ④ 보험연도 쏠산업 및 업종별 수입영향률 추정
- ⑤ 업종별 부가보험료율 산정
- ⑥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분산(1차 분산)
- ⑦ 1차 분산 후 업종별 보험급여 지급률 및 부가보험료율 재산정
- ⑧ 제1차 업종별 보험료율(안) 산정
- ⑨ 징수목표액과 개산보험료 수입예상액 비교
- ⑩ 업종별 추가증가 지출률 산정
- ⑪ 제2차 업종별 보험료율(안) 산정
- ⑫ 제2차 업종별 보험료율(안)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추가분산(2차 분산)
- ⑬ 업종별 보험료율 확정
- ⑭ 사업장별 보험료 산정(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에 보험료율 구성 및 산정방법에 대한 기본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양재성 외(2009), 김상호(2004) 및 윤조덕 외(2003) 참조.

$$\text{보험료율}(100\%) = [\text{보험급여 지급률} + \text{추가증가 지출률}](85\%) + \text{부가보험료율}(15\%)$$

$$\text{보험급여 지급률} = \frac{\text{과거 3년 보험급여 총액}}{\text{과거 3년 임금총액}}$$

$$\text{추가증가 지급률} = \frac{\text{징수목표액} - \text{개산보험료 수입예상액}}{\text{보험연도 임금총액 추정액}}$$

부가보험료율 = 산재예방과 행정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보험료율

③, ④, ⑤, ⑥, ⑫, ⑭ 단계가 사업장 보험료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과정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업종별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인 업종별 보험급여 지급률이며(③단계에 해당), 이는 6월 30일 기준 과거 3년 업종별 임금총액에 대한 업종별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이다.

$$\text{업종별 보험급여 지급률} = \frac{\text{과거 3년 업종별 보험급여 총액}}{\text{과거 3년 업종별 임금총액}}$$

부과 보험료 합계는 징수 보험료 합계와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차이를 수입영향률 변수를 통하여 보정한다(④단계에 해당). 이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²⁾ 일시납부 시 5% 공제 및 전년도 초과 납부 시 개산보험료로 충당, 부도 및 휴·폐업 등에 의한 보험료 미징수이다(윤조덕 외 2003, p.30).

2) 할증 적용 사업장보다 할인 적용 사업장이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대칭 형태의 할인을 및 할증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다.

쏘산업 수입영향률과 업종별 수입영향률은 다음 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text{쏘산업 수입영향률} = \frac{\text{과거 3년 쏘산업 개산보험료 수납액의 합계}}{\text{과거 3년 쏘산업 개산보험료 부과액의 합계}}$$

$$\text{업종별 수입영향률} = \frac{\text{과거 3년 업종별 개산보험료 수납액의 합계}}{\text{과거 3년 업종별 개산보험료 부과액의 합계}}$$

부가보험료는 산재예방 사업(산업안전공단 출연), 근로복지사업 및 행정(근로복지공단 출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의 15%에 해당한다. 업종별 부가보험료율은 쏘산업 균등부담률과 업종별 재해산업 부담률로 구성되며 다음 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⑤단계에 해당).

$$\text{쏘산업 균등부담률} = \frac{\text{쏘산업 균등부담 총액}}{\text{쏘산업 임금총액 추정액} \times \text{쏘산업 수입영향률}}$$

$$\text{업종별 재해산업 부담률} = \frac{\text{재해산업 부담총액} \times \text{업종별 보험급여 총액 대비율}}{\text{업종별 임금총액 추정액} \times \text{업종별 수입영향률}}$$

이어서 가입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거 3년 이전에 폐업 또는 소멸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보험급여를 쏘업종에 분산시킨다(⑥단계에 해당). 폐업 또는 소멸된 사업장이 많은 업종에서 발생하는 과부담 문제를 전체 업종에 분산시켜 연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사양화가 심한 석탄광업 등에서 발생하는 높은 보험료율을 낮추기 위해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특정 사업 종류의 보험료율이 전체 산업 평균 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였다(동법 제14조 제5항). 아울러 보험료율 변동 폭을 축소하기 위하여 직전 보험연도 보험료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하였다(동법 제14조 제6항).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양산업의 보험료율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고 보험료율 변동 폭을 제한한다(⑫단계에 해당).

마지막으로 업종별 보험료율 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여 사업장의 산재예방 투자를 유도하고 재원조달에 참여하는 사업장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실

적요율제도를 적용한다(⑭단계에 해당). 업종별 보험료율은 업종 내 사업장별로 상이한 위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데,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다.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은 2009년 법 개정으로 상시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총공사 실적 60억원 이상인 건설업 일괄적용사업으로 확대되었다³⁾. 증감 비율은 수지율과 사업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최대 증감 비율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에는 ±20%, 30명 이상 150명 미만 사업장에는 ±30%,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사업장에는 ±40%, 1,000명 이상 사업장에는 ±50%가 적용된다.

$$\begin{aligned} \text{개별실적요율} &= \text{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pm (\text{해당 사업종류의} \\ &\quad \text{일반요율} \times \text{수지율에 의한 증감 비율}) \\ \text{수지율} &= (\text{과거 3년 보험급여 총액} / \text{과거 3년 보험료 총액}) \times 100 \end{aligned}$$

2. 주요 문제점

가. 재해예방 유인기능의 취약

현행의 보험료 산정 방식은 예방사업에 대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 이유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기준기간(reference period)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기인하는 보험급여 지출 역시 요율 산정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적시성(timeliness)이 부족하다. 업종별 보험급여 지급률과 개별실적요율제도 수지율 산정 시 기준기간(과거 3년) 이전에 발생한 재해일지라도 기준기간에 발생한 보험급여를 지출에 포함시켜 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산재예방을 위한 최

3) 법 개정으로 2011년 보험연도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에도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적용된다.

근의 투자가 보험료를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과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된다. 이것은 특히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동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업종별 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기준기간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기인하는 보험급여 비중이 낮지 않기 때문에 최근의 산재 예방 투자가 보험료를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둘째, 업종분류 방법에서의 문제이다. 급격히 진행된 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해당사자 업종의 반발이 있어야 이를 업종분류에 반영하였다.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기초하여 업종을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그러나 업종분류를 동질적 위험집단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현재 61개 업종으로만 분류한 결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떨어지며 이질적 위험을 가진 사업장이 동일 업종에 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업종별 등급요율이 업종의 특색 및 경영상태의 차이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산재예방 투자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개별사업장이 산재예방사업에 투자할 경제적 유인이 적어진다(이기영 외 1998, p.25). 그 결과 업종별 보험료율의 차등화가 개별사업장의 산재예방 투자를 위한 경제적 유인으로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장수 기준으로 2010년 6월말 현재 2.9%에 불과하다⁴⁾. 2011년부터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사업장이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적용사업장 수가 증가하여도 적용 비율은 여전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⁵⁾.

나. 재원조달의 형평성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미적용 사업장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통계적으로 산재발생 확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4)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1,290,806 적용사업장 중에서 37,672 사업장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5)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2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46,500개에 불과하다.

증감률 산정을 위한 기준수지율이 75%-85%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할증이 적용되는 사업장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또한 구간 폭이 일정한 대칭적인 할인상한선과 할증상한선을 적용함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보험료 누출이 발생한다⁶⁾. 그 결과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받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이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소규모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의 부담으로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역진적 재분배가 발생하고 있다⁷⁾.

Ⅲ. 독일의 보험료 산정 방법

1. 산재보험제도 개요

우리나라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것이 독일의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이며, 이는 업종별 및 지역별 산재보험조합(Berufsgenossenschaft) 형태로 운영되었다.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은 2004년까지 35개 산재보험조합으로 운영되었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사양산업 발생,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가입자 수 감소 및 EU 확대에 따른 근로자 이동 증가로 재정 위기에 처하는 산재보험조합이 증가하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조합 간 합병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0년 현재 업종별 산재보험조합 체계로 전환되었다.

2008년 10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산재보험 현대화법(Unfallversicherungsmodernisierungsgesetz)은 산재보험 조직을 변화된 산업구조에 맞추고, 연금 수급자에 대한 미적립 부채 분배 문제를 해결하며, 산재보험조합

6) 개별실적요율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참조.

7) 2006년의 경우 할인 적용 사업장이 77.9%, 할증 적용 사업장이 19.7%이었으며,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을 통한 보험료 수입 감소액은 3,671억원(2006년 보험료 수입의 11.5%에 해당)이었다(김상호 외 (2006), p.41).

수를 줄임으로써 행정조직을 현대화하여 조직운영의 경제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09, p.501). 산재보험법(사회법전 7권)의 신설된 조항(제222조 제1항)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산재보험조합 수를 9개로 축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0년 8월 현재 산재보험조합 수가 12개여서 아직 동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규정되어 있는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2. 보험료 산정 방법

가. 개요

독일 산재보험은 부과방식(PAYG system)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립금이 없다. 다만 미래 연금급여의 원만한 지급을 위해 전년도 지급한 연금급여의 2배에 상응하는 연금지급준비금이 적립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연금급여 지급액의 3%를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다(산재보험법 제172조 제1항)⁸⁾.

2010년 현재 산재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보험료를 건강보험에서 공동 징수하며, 산재보험에서 사업장관리만 하기 때문에 개별근로자의 정보는 직접적으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산재보험의 임금신고서가 폐지되고 연금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노인간병보험의 정보를 수집하는 건강보험에서 산재보험 피보험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토록 하여 행정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도 사업장관리체계에서 개인별관리체계로 전환될 것이다.

독일에서 적용하는 보험료 후납제에서는 회계연도 경과 후 실제 지출액과 실제 임금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징수체계(확정정산 제도)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보험연도 임금

8) 그러나 산재보험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산업분야의 경제 상황이 특별히 좋거나 나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방보험청(Bundesversicherungsamt) 승인 하에 연금지급준비금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동법 제172조 제2항).

총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⁹⁾. 기업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다음 5단계를 통하여 산정된다.

- ① 업무분야별 위험등급 산정
- ② 특별한 기업운영 방식 사용 시 위험등급 조정
- ③ 기준보험료 및 기업별 보험료 산정
- ④ 예방요율제도 적용
- ⑤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

첫 번째 단계는 사업장 특성을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비슷한 위험을 가진 업무분야별로 묶어 위험등급(Gefahrklassen, risk category)을 산정하는 것이다. 위험등급은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로 독일은 상세하게 분류된 위험등급표를 사용하여 세분화된 업무분야별 보험위험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재원조달에서의 기업 간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산재예방을 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¹⁰⁾.

두 번째 단계는 다른 기업과 상이한 기업운영 방식 때문에 다른 기업과 현저히 상이한 보험위험을 가진 기업에 대해 위험등급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중요하지 않다. 세 번째 단계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험료(Beitragsfuss, base contribution) 및 기업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한 기업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예방요율제도(Pramienverfahren, Schedule Rating System)를 적용하는 것이다. 예방요율에서는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사전적(ex ante)으로 평가하는 점에서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사후적(ex post)으로 평가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와 차이가 있다¹¹⁾. 산재보험조합이 예방요율제도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9) 예를 들면 2010년 초에 부과한 보험료는 2009년도 지출액, 잉여금 및 2009년도 피보험자 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다.

10) 한국의 보험료 산정단위가 사업장인 것과 달리 독일에서는 기업이다.

11) 보험료율제도의 이론적 분류방법에 대해서는 김상호(2010, p.126-128) 참조.

있는데(동법 제162조 제2항), 2010년 현재 3개 산재보험조합이 동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개별실적요율제도로 개별기업의 산재예방 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산재보험조합이 보험료율 할인, 할증 또는 할인·할증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5단계 중 현실적으로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1단계, 3단계 및 5단계이다. 2단계는 기업운영방식이 현저히 다른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사례가 드물며, 4단계는 2010년 현재 3개 산재보험조합에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제도가 아니다¹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단계, 3단계 및 5단계 위주로 설명토록 한다.

나. 위험등급 산정

위험등급이 가입자의 보험료를 차등화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산재보험법에는 위험등급을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비율로 산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157조 제3항). 이처럼 세부사항을 산재보험조합에 위임한 것은 조합 특성에 맞는 보험료 산정방식을 선택토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오랜 산재보험 운영 경험에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Schulz(1989), p.7).

위험등급을 산정하려면 위험분산을 고려하여 위험 정도가 유사한 업무분야를 묶은 위험공동체인 위험등급단위(Gefahrtarifestelle)를 설정해야 한다(동법 제157조 제2항). 업무분야가 어떤 위험등급단위에 속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율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는 민감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다양한 업무분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위험등급이 적용된다. 피보험자의 보험위험을 분산시키려면 충분히 큰 위험공동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연방보험청은 위험등급단위 규모로 기준기간 총임금이 1억 유로 이상이 될 것을 권고한다¹³⁾.

먼저 기준기간의 위험등급단위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에 1,000

12)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상호 외(2009, pp.28-47) 참조.

13) 이에 관한 정보는 북부남부 금속업 산재보험조합 홈페이지의 위험등급표에서 얻었다.

을 곱한 부담수치(Belastungsziffer)를 계산한 후 소수점 이하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한다¹⁴⁾. 여기서 1,000으로 곱해주는 것은 위험등급이 너무 작은 숫자로 산출되어 사용하기 불편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산재보험조합은 업무분야별 위험등급을 산정한 위험등급표를 공시하는데, 한번 작성된 위험등급표는 최장 6년 사용되며(동법 제157조 제5항), 산재보험조합이 적용기간을 결정한다. 한편 <표 1>은 위험등급 산정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text{부담수치} = \frac{\text{위험등급단위에 지출된 보험급여 총액} \times 1,000}{\text{위험등급단위 임금총액}}$$

<표 1> 위험등급 산정 과정

위험등급단위 (업무분야)	기준기간의 보험급여 총액(€)	기준기간의 임금총액(€)	부담수치	위험등급
A	4,928,000	4,000,000,000	1.232	1.2
B	6,156,000	3,000,000,000	2.052	2.1
C	8,976,000	2,000,000,000	4.488	4.5
D	9,909,000	3,000,000,000	3.303	3.3

주: 위험등급은 부담수치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였음.

위험등급을 산정하려면 위험등급단위별 보험급여 총액과 임금총액을 산정할 기준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산재보험조합이 기준기간을 결정한다. 기준기간이 너무 길면 위험등급이 현재의 보험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기준기간이 너무 짧으면 우연에 의한 사고가 큰 비중으로 반영되어 보험위험을 왜곡시킬 수 있

14) 소수점 이하의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할지 산재보험조합이 결정한다.

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산재보험조합에서 과거 4-6년을 기준기간으로 사용한다(Bigge 외(1997), p.29).

산재보험조합이 결정해야 하는 다른 중요한 사항은 위험등급을 산정할 때의 보험급여 범위이다. 즉 기준기간에 신규로 발생한 재해에 기인하는 보험급여만으로 한정할지 또는 기준기간 이전에 발생한 재해이면서 기준기간에 지급한 보험급여를 포함할지의 여부이다. 위험등급 산정을 위한 보험급여에 기준기간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기인하는 보험급여를 포함시키면 재해를 예방할 경제적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재보험조합에서 신규발생 재해에 기인하는 보험급여로 한정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위험등급 산정에 사용되는 보험급여에는 산업재해, 통근 재해 및 직업병에 기인하는 모든 급여가 포함된다. 참고로 <부표 2>에 사무업 산재보험조합의 위험등급표를 소개하였다.

다. 기준보험료 및 기업 보험료 산정

매년 새로이 산출하는 기준보험료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위험등급 1인 업무분야의 임금 1,000 유로에 적용되는 보험료이다. 기준보험료는 모든 기업의 보험료단위(임금총액×위험등급)를 합산한 수치에 대한 보험료징수 목표액의 비율로 산정된다(동법 제167조 제2항 제1문).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표 2>를 가지고 기준보험료 산정 방법을 설명하겠다. 2010년 초에 부과·징수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4개의 위험등급단위로 구성된 산재보험조합의 위험등급단위별 임금총액(2009년 기준)과 위험등급이 주어지면, 이들을 곱하여 보험료단위가 산정된다.

$$\text{기준보험료} = \frac{\text{보험료징수 목표액} \times 1,000}{\sum_i (\text{위험등급단위 임금총액}) \times (\text{위험등급})}$$

단, i 는 위험등급단위임.

〈표 2〉 기준보험료 산정 과정

(단위: 유로)

위험등급단위 (업무분야)	임금총액(a)	위험등급(b)	보험료단위(a×b)
A	1,000,250,000	1.2	1,200,300,000
B	750,170,000	2.1	1,575,357,000
C	500,350,000	4.5	2,251,575,000
D	750,970,000	3.3	2,478,201,000
소 계			7,505,433,000

주: 임금총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됨.

- 해당연도의 잠정적 보험료징수 목표액: 15,750,000 유로

$$\text{잠정적 기준보험료} = \frac{15,750,000 \times 1,000}{7,505,433,000} = 2.0985479$$

해당연도 보험료징수 목표액이 주어지면 보험료단위를 합산한 수치에 대한 보험료징수 목표액의 비율에 1,000을 곱하여 잠정적 기준보험료를 산정한다. 여기서 1,000을 곱하는 것은 위험등급 산정에 1,000을 곱하였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산정한 기준보험료가 소수점 이하의 복잡한 수치로 산정되면 보험료 산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산재보험조합 이사회는 보험료징수 목표액을 15,761,409 유로로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과정을 통해 최종 기준보험료로 2.1 유로가 산정된다¹⁵⁾.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예의 경우 최종 보험료징수 목표액은 15,761,409 유로가, 기준보험료는 2.1 유로가 된다. 이는 위험등급 1인 업무분야의 임금 1,000 유로에 대해 2.1 유로를 부과하며, 위험등급 2.1인 업무분야 B의 임금 1,000 유로에 대해 4.41 유로의 보험료를 부과함을 의미한다.

15) 기준보험료에는 단위가 없지만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로를 사용하였다.

한편 개별기업 보험료는 위험등급단위별 임금총액에 위험등급을 곱하여 합산한 수치에 기준보험료를 곱한 후 이를 1,000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여기서 1,000으로 나누는 것은 위험등급 산정 시 1,000으로 곱한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이다.

$$\text{개별기업 보험료} = \frac{\sum_i \{(\text{위험등급단위 임금총액}) \times (\text{위험등급}) \times (\text{위험등급})\}}{(1,000)}$$

단, i 는 위험등급단위임.

세 위험등급단위(A, B, C)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상정하여 <표 3>에 보험료 산정 과정을 기술하였다. 먼저 위험등급단위별 임금총액에 위험등급을 곱하여 보험료단위를 구한 후, 이 수치에 기준보험료(임금 1,000 유로 당 2.1)를 곱하면 위험등급단위별 보험료가 산정된다. 위험등급단위별 보험료를 합산하면 해당기업의 보험료(67,652 유로)가 산출되며, 개별기업 보험료를 합산하면 산재보험조합의 보험료징수 목표액과 일치하게 된다.

<표 3> 개별기업 보험료 산정 과정

(단위: 유로)

위험등급단위 (업부분야)	임금총액 (a)	위험등급 (b)	보험료단위 (a×b)	보험료
A	1,007,035	1.2	1,208,442	2,538
B	3,579,810	2.1	7,517,601	15,787
C	5,219,830	4.5	23,489,235	49,327
소 계			32,215,278	67,652

주: 임금총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함.

라.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

모든 산재보험조합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동법 제 162조 제1항 제1문),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산재보험조합이 할인, 할증 또는 할인·할증 형태의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는 보험사고에 포함시킬지도 결정할 수 있다¹⁶⁾.

- ① 무과실 보험사고(예: 천재지변)
- ② 사업장 소속이 아닌 사람의 단독과실에 의한 보험사고
- ③ 출장재해
- ④ 직업병

또한 할인 및 할증의 크기를 결정하는 척도로 보험사고 발생 건수, 보험사고 강도, 보험사고 비용 또는 이들을 혼합한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162조 제1항 4문). 이처럼 광범위한 자치운명을 허용하는 이유는 산재보험조합 특성을 반영한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운영토록 하여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기업고유의 보험사고 위험에 포함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개별실적요율 보험사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동법 제162조 제1항 2문, 동법 제8조 제2항 1호-4호).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기준기간의 신규 산재에 기인하는 보험급여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참고로 광업 산재보험조합이 2010년 적용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⁷⁾. 할인·할증 형태로 운영하면서 할인 또는 할증 크기를 결정하는 척도로 산재사고 건수와 강도를 사용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대상 연도 이전 3년(2010년 3월

16) 2008년 기준 3개 조합이 할인 형태로, 6개 조합이 할증 형태로, 14개 조합이 할인·할증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였다(DGUV(2009), p.64).

17) 이에 대한 것은 정관 제28조와 부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에 부과한 보험료의 경우 2006년-2008년)을 기준기간으로 적용하며, 갱외기업과 갱내기업에 상이한 개별실적요율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갱외기업의 경우 산재에 기인하는 50% 이하의 근로능력상실 사고에 대해 1점, 50% 이상의 근로능력상실 사고와 사망 사고에 대해 2점을 부여한다. 그러나 직업병은 개별실적요율 보험사고에서 제외한다. 기업 재해율이 평균재해율보다 작으면 할인을, 높으면 할증을 적용한다(아래 수식 및 <표 4> 참조). 한편 갱내기업의 경우 산재사고에 대해 최대 ±50%의 할인을 및 할증률을 적용하며, 직업병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할인을 및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다.

$$\text{기업 재해율} = \frac{\text{기준기간의 신규산재에 기초한 해당기업 산재점수} \times 100,000}{\text{해당기업 총근로시간}}$$

$$\text{평균 재해율} = \frac{\text{기준기간의 신규산재에 기초한 모든 기업 산재점수} \times 100,000}{\text{위험등급단위 총근로시간}}$$

<표 4> 광업 산재보험조합의 갱외기업 개별실적요율 적용 내용

할인		할증	
평균재해율과의 차이	할인율	평균재해율과의 차이	할증률
-30% 이하	0%	+30% 이하	0%
-30% - -40% 이하	5%	+30% - +40% 이하	5%
-40% - -50% 이하	10%	+40% - +50% 이하	10%
-50% - -100% 이하	15%	+50% - +100% 이하	15%
-100% 이상	20%	+100% 이상	20%

자료: 정관 부칙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작성

또한 도매 및 창고업 산재보험조합과 소매업 산재보험조합이 2008년 1월 1일 합병하여 상업 및 배송 산재보험조합이 탄생했는데, 2010년 현재 통합 이전의 조합별 개별실적요율제도를 해당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정관 제72조 제1항 1문). 이에 따라 도매 및 창고업 분야에서는 보험료 할증 형태로, 소매업 분야에서는 할인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매 및 창고업 분야에서는 2010년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연도 이전 2년 자료에 기초하여 재해율을 산정하며,¹⁸⁾ 직업병에 대한 보험급여는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별기업 재해율이 평균재해율보다 25% 이상 높으면 할증이 적용되며, 최대할증률은 20%이다. 동 조합의 재해율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기업 재해율} = \frac{\text{과거 2년 신규산재에 기인하는 해당기업의 보험급여액}}{\text{해당기업 보험료}}$$

$$\text{평균 재해율} = \frac{\text{과거 2년 신규산재에 기인하는 모든 기업의 보험급여액}}{\text{모든 기업 보험료}}$$

Ⅳ. 한국제도와 독일제도의 비교

재원조달 분야에서 한국제도와 독일제도의 차이점을 <표 5>에 정리하였으며,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한다. 첫째, 재정방식으로 독일이 부과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부분적립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규정에 차이가 있다. 둘째, 개별실적요율제도가 독일에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치율(재해율) 산정 방법에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재해 발생 시점에 관계없이 기준기간(3년)에 발생한 모든 보험급여 지출액을 사용하는 반면, 독일에서는 기준기간에 발생한 신규산재에 기인하는 보험급여 지출액 또는 기준기간에 발생한 신규산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

18) 2010년에 부과한 보험료는 2007-200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사업주의 산재예방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셋째, 한국에서 업종별 보험급여 지급률을 산정할 때 기준기간에 발생한 모든 보험급여를 사용하는 반면, 독일에서는 위험등급 산정 시 기준기간에 발생한 신규산재에 기인하는 보험급여로 제한하고 있다. 넷째, 독일에서 업무단위별 위험등급을 계산하여 보험료 산정에 사업장 특성을 상세히 반영하는데 비해 한국에는 위험등급이 없다.

V. 시사점

한국제도와 독일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사업주의 예방활동 강화를 유인하기 위해 기준기간에 발생한 신규재해에 기인하는 보험급여에 기초하여 개별실적요율 수지율을 산정토록 변경한다. 지금까지 수지율을 산정할 때 기준기간에 발생한 과거의 모든 재해에 기인하는 보험급여 지출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예방 노력이 수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된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 대형 사고가 발생한 후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재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해당 사업장의 수지율이 높게 나올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산재예방 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처럼 기준기간에 발생한 신규재해에 기인하는 보험급여로 제한하여 수지율을 산정할 것을 제안한다.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이러한 형태로 변경하려면 기준기간으로 몇 년이 산재예방을 위하여 적합한지 우리나라 통계를 분석하여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시적 제도 변화가 사업주에게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변경 초기에는 기준기간을 비교적 긴 기간으로 설정한 후 한국 실정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는 기준기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업종별 보험요율 산정방식을 변경할 것을 검토한다. 업종별 보험요율은 최근 3년 업종별 임금 총액에 대한 최근 3년 업종별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로 산정되는데, 최근 3년 업종별 보험급여 총액에 모든 과거 산재에 기인하는 보험급여를 포

〈표 5〉 재정 관련 한국제도와 독일제도 비교

항 목	독 일	한 국
1. 보험료 납부방식	· 후납주의 · 매년 2월 11일까지 임금신고서 제출 후 일반적으로 4월 15일까지 납부	· 선납주의로 개산보험료 및 확정 보험료 사용 · 매년 7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2. 피보험자 관리방법	· 사업장 관리 · 2012년부터 개인별 관리	· 2011년부터 개인별 관리
3. 재정방식	· 부과방식	· 부분적립방식
4. 지급준비금	· 전년도 연금 지급액의 2배 적립 시 까지 전년도 연금급여 지급액의 3% 적립	· 책임준비금
5. 업종별 보험급여 지급률	· 없음	· 기준기간에 발생한 모든 보험급여에 기초하여 산정
6. 개별실적요율	· 모든 사업장에 적용 · 할인, 할증 및 할인·할증 형태 중 선택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적용 · 할인·할증 형태
7. 개별실적요율 수지율(재해율) 산정 기준	· 기준기간에 발생한 신규 재해에 기인하는 보험급여 또는 신규 재해	· 과거에 발생한 모든 재해에 기인하는 기준기간의 보험급여
8. 위험등급	· 업무단위별로 적용 · 기준기간의 신규 재해에 기인하는 보험급여에 기초하여 산정	· 없음
9. 예방요율	· 선택사항이며 3개 조합에서 운영	· 없음

함시키고 있다¹⁹⁾. 이에 따라 과거에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업종의 보험료율이 매우 높아 업종 간 재분산 문제가 발생하고 업종 기준으로 산재 예방 활동을 강화할

19) 다만 과거 3년 이전에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험급여는 쏘업종에 분산시킨다.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다. 따라서 개별실적요율에서와 동일하게 기준기간에 발생한 신규재해에 기인하는 보험급여에 기초하여 업종별 보험요율을 산정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업종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²⁰⁾. 현행 업종분류에서는 동질적 위험집단으로 세분화하지 못해 이질적 위험을 가진 많은 사업장이 동일 업종에 속하게 되어 개별사업장이 예방사업에 투자할 경제적 유인이 크지 않다. 업종을 세분화하면 동일 업종 소속 사업장의 동질성이 강화되어 예방 활동을 강화하게 되며 비용 부담에서의 사업장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사회보험 형태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에서 재원 조달에서의 사업장 간 연대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책임배상보험 성격이 강한 산재보험에서 연대성보다 예방 활동 강화와 비용 부담에서의 사업장 간 형평성 증대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업종을 세분화하면 현행의 높은 업종 간 보험료율 차이가 확대될 것을 우려할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제안한 업종별 보험료율 산정방식 개선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산재예방에 기여한다는 것을 상정하여 출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산업재해 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며,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도록 한다. 아울러 산재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재원 조달방식의 개선에 추가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0) 실제로 업종을 어느 정도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상호,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체계의 안정화 방안」, 『노동경제논집』, 제22권 제2호, 한국노동경제학회, 1999.12, pp.145~161.
- _____, 「산재보험제도 재정방법 및 보험요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제19집 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4.9, pp.63~82.
- _____, 『개별실적요율의 기업규모별·연간 증감폭 개선방안』, 노동부, 2006.
- _____, 『산재예방요율제도 도입방안 연구』, 노동부, 2009.
- _____, 「산재보험 예방요율제도 도입방안」,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5, pp.123~143.
- 김상호, 심창학, 『국내외 산재보험제도 운영의 비교연구』, 노동부, 2009.
- 노동부, 『2009 산업재해 현황분석』, 2009.
- 양재성, 이세현, 장희윤, 『2010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산정』, 노동부, 2009.
- 윤조덕, 이지은, 김상호, 『2003년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산정 및 독일 산재보험 요율산정 절차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이기영, 김기홍, 안종범, 유일호, 『산재보험제도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8.
- Bigge, G. and Fabian, P., Lehtmaterial fur die Fortbildung zum gehobenen berufsgenossenschaftlichen Dienst, Hauptverband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1997.
- 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Soziales, Übersicht uber das Sozialrecht, Bonn, 2009.
-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DGUV), Geschäfts- und Rechnungsergebnisse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und Unfallversicherungsträger der öffentlichen Hand 2008, 2009.
- Schulz, U., Grundfragen des berufsgenossenschaftlichen Gefahrtarifs, Hauptverband der gewerblichen Berufsgenossenschaften, 1989.
- Sozialgesetzbuch, 32. Auflage, Beck-Texte im dtv, Munchen, 2005.
- VBG(Verwaltungs-BG) 홈페이지(<http://www.vbg.de>).

Abstract

It is expected to reinforce the activity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to evaluate employer's efforts to avert occupational diseases and to reflect it adequately in calculating the premium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t can also contribute to enhancing equity of the firms which participate in financing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duce those work-related accidents by comparing methods of calculating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premium in Korea and Germany and making some suggestions for reinforcing employers' effort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balance rate in Experience Rating System should be based on the expenses related with new industrial accidents within the reference period.

※ Key words : calculation of premium,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부 록】

〈부표 1〉 산업재해 발생 추이

(단위: 명,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근로자 수	9,485,557	10,581,186	10,571,279	10,599,345	10,473,090	11,059,193	11,688,797	12,528,879	13,489,986
재해자 수	68,976	81,434	81,911	94,924	88,874	85,411	89,910	90,147	95,806
재해건 수	67,930	80,433	80,755	92,697	87,033	84,161	88,821	89,106	94,745
재해율	0.73	0.77	0.78	0.90	0.85	0.77	0.77	0.72	0.71
도수율	2.89	3.13	3.19	3.68	3.51	3.25	3.31	3.15	3.41
강도율	1.88	2.12	2.13	2.35	2.48	2.67	2.65	2.26	2.53

주: 1) 도수율은 1,000,000 근로시간당 재해발생 건수임.

2) 강도율은 1,000 근로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임.

자료: 산업재해 현황분석(노동부, 2009).

〈부표 2〉 사무업 산재보험조합의 위험등급표(2009년-2010년 적용)

위험등급 단위	업무 종류	위험 등급	위험등급 단위	업무 종류	위험 등급
01	금융기관, 금융서비스기관, 증권거래소	0.38	20	사회사업 단체	3.39
02	보험회사, 사회보험관장기관	0.45	21	여가와 취미생활을 위한 단체	2.94
03	엔지니어회사, 설계 회사	0.91	22	주택관리	3.08
04	정보통신 회사	0.33	23	예술 및 문화 단체 2009년 2010년	2.70 3.00
05	교육기관	1.79	24	임대회사	0.24
06	상담회사	0.63	25	북권회사	0.67
07	신문·방송 회사	0.50	26	동산 임대 회사	2.52
08	법률상담 회사, 기업상담 회사	0.44	27	탐정사무소	7.54
09	부동산 회사	1.32	28	정보제공 및 추심 회사, 수수료조사·수수 료공제·수수료납입 회사	0.60
10	안전감시 회사	3.57	29	공연기획사	1.68
11	경제 및 정치 이익단체	0.59	30	동물원, 동물보호·동물관리 동물사육·조련 회사 2009년 2010년	2.70 3.00
12	학문연구소	0.54	31	근로자파견회사	
13	브로커 및 중개 기업	1.09	31.1	서비스업 종사자 및 정규직원	0.86
14	종교단체	1.11	31.2	여타분야 종사자	8.54
15	시민사회단체	1.36	32	스포츠회사	
16	여행사	0.65	32.1	1-2부 분데스리그 프로선수	57.81
17	행정대행회사	0.57	32.2	기타 프로선수 2009년 2010년	40.54 45.04
18	광고회사, 디자이너	0.78	32.3	기타 피보험자	2.42
19	보험대리인, 금융중개인	1.53	33	기타 서비스 회사	1.00
	건축예금조합대리인: 2009년 2010년	0.67 0.74			

자료: VBG(Verwaltungs-BG) 홈페이지(www.vbg.de).